

꿈과 희망을 소중히 가꾸는 창의적인 직업인 육성

至誠 勇氣 創造

# 제13기 전주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통합 연수 자료

2020. 4. 10.(금)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전주공업고등학교**  
(<http://jt.hs.kr>)



# [#1]



# [#2]



# [# 1]

## I. 전주공고 재정운영 기본방향

행정계장 강양화

## II. 학교발전기금 이해

주무관 김혜인

# 전주공고 재정운영 기본 방향

행정계장 강양화

## I. 개요 및 현황

### 1. 2020 교육부 예산안 개요<sup>1)</sup>

< 2020년도 교육부 예산안(정부안) 개요 >

(단위: 억원, %)

구 분	'19년		'20년 정부안 (B)	증감(B-A)	
	본예산 (A)	추경		금액	증감률
<b>【교육분야】</b>	703,353	704,239	721,688	18,335	2.6
· 유아및초·중등교육	593,832	594,014	602,958	9,126	1.5
<b>(지방교육재정교부금)</b>	<b>552,488</b>	<b>552,488</b>	<b>554,967</b>	<b>2,479</b>	<b>0.4</b>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8,153	38,153	37,846	△307	△0.8
· 고등교육	100,806	101,510	108,057	7,251	7.2
· 평생·직업교육	7,435	7,435	9,342	1,907	25.6
· 교육일반	1,280	1,280	1,332	52	4.1

전북교육청 재정의 90%정도<sup>2)</sup>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및 교육세 세수 추계에 따라 '19년 본예산 55조 2,488억원 대비 2,479억원(0.4%) 증액된 55조 4,967억원으로 나타났는데 17개 시도 평균 145억원 꼴로 늘어난 셈이며 우리 도 공·사립 학교수 1,293교(유치원 포함)로 나누어 보면 교당 평균 1,121만원 꼴로 늘어나는 셈이다. 본교 2020학년도 재정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지표로써 정부(교육부) 예산안을 분석한다면, 특이한 사정변화가 없는 한 학교기본운영비는 기존 산출방식에 의해 예년 수준에서 결정될 걸로 보이며 목적사업비는 새로운 타이틀로 신설되거나 중요성이 강조되는 정책사업 위주로 2019학년도 못지 않게 다소 큰 규모로 늘어날 걸로 전망된다.

### 2. 2020~2022 학교 규모 변화

1) 교육부 보도자료, 2019.8.29.

2) 지방교육재정알리미, www.eduinfo.go.kr, 2017회계연도 전북교육청 재정도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33,102억원 중 이전수입 29,732억원(89.82%)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검토와 관련하여 두 번째로 살펴 볼 거시지표는 본교의 향후 학교규모 변화 양상이다. 먼저 **학생수 변화 양상**을 살펴보자. 전라북도 통계<sup>3)</sup>에 의하면 고등학교 학령인구(15세~17세) 장기 추세는 아래 차트와 같다.

**< 전라북도 고등학교 학령인구(15~17세) 변화 >**



(단위: 명)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고
학령인구	70,845	<b>66,071</b>	60,108	<b>54,607</b>	51,409	<b>49,016</b>	
증감(비율)	△4,774(+6.7%)	△5,963(-9.0%)	△5,501(-9.2%)	△3,198(-5.9%)	△2,393(-4.7%)		

그래프는 2015년 이전부터 2021년까지 전라북도 고등학교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특히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2년간은 9%P가 넘는 감소율을 보이고, **3년 주기로 10,000명에 육박하는 숫자가 들어드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한편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3년의 평균 감소율은 **8.3%P**로 나타났다. 교육부 산하 통계기관 자료를 토대로 추정해 본 아래의 향후 본교 학생수 감소율(**8.6%P**)과 비교해도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본교 학생수 변화 추이 >**

(단위: 명)

학년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고
학생수	1,142	1,137	1,074	<b>952</b>	<b>871</b>	<b>797</b>	
증감(비율)	△5(-0.4%)	△63(-5.5%)	△122(-11.3%)	△81(-8.6%)	△74(-8.6%)		

※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교알리미<sup>4)</sup>

3) 전라북도통계시스템, <http://stat.jeonbuk.go.kr>, 통계DB, 시군 장래인구 추계, 시군별 학령인구

위의 자료 역시 최근 4년간(2016~2019)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감소 폭이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2017: 0.4% → 2018: 5.5% → 2019: 11.3%) 최근 3년(2017~2019) 평균 감소율(8.6%) 적용 시 2021년 본교 전체 학생수는 800명 이하로 내려갈 전망이다.

한편 학생수 변화에 따른 학급수의 변화 양상은 아래와 같다.

< 본교 학급수 변화 추이 >

(단위: 학급)

학년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고
학급수	41	41	41	41	40	39	38	

국가적 학령인구 급격한 감소로 본교 도내 신입생 모집도 한계에 다다른 실정임을 감안 교육감 승인과 학칙 개정 등을 거쳐 본교 학급수를 2020학년도부터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1학급씩 감축하게 된다<sup>5)</sup>. 향후 3년간 평균 학생수 감소 63명, 감축 학급수(41 → 40 → 39 → 38)를 고려한 학교기본운영비 감소분은 아래 표와 같다.

 < 향후 3년간 학교기본운영비 감소분 >

(금액단위: 천원)

학년도	2020	2021	2022	기준단가
학급경비	3,734	3,734	3,734	3,734
학생경비	14,049	14,049	14,049	223
감소금액	17,783	17,783	17,783	

현재로부터 이전 3년의 학생수 감소의 평균치인 63명에 학생당 단가를, 향후 3년에 걸쳐 감축되는 학급수 1에 급당단가를 각각 곱해 합산한 금액이 전년대비 기본운영비 감소금액이 되고, 이는 『2020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p.110)』에 나온 학교기본운영비 배분 기준(공업계고)에 근거했다.

요컨대 본교는 사실상 뚜렷한 대책이 없는 학생수·학급수 감소라는 학교유지의 난제에 부딪쳐 당장 내년부터 해마다 17,783천원, 내리 3년 동안 총 53,349천원의 운영비가 없어지는 셈이다. 이는 단위학교 기본운영비가 국가 교육 예산의 증가와 구조적으로 비례할 수 없다는 확실한 증거이자 학교 유지·운영을 위한 독립재원 확보의 필요성과 어려움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4) <https://www.schoolinfo.go.kr/>, 학교검색(전주공업고) → 학교현황(2016-2019)

5) 전주공업고등학교규칙 제7조(2019.8.20., 심의의결)

## II. 재정운영 기본방향

### 1. 학교회계

#### 가. 세입 총괄

(금액단위: 천원)

장	관·항·목	2016	2017	2018	2019	비고	
이 전 수 입	국고보조금		168,000	180,520	169,000		
	기초지자체전입금	134,441	95,993	51,977	36,000		
	교특회계전입금	3,948,681	4,543,313	4,822,573	5,000,317		
	발전기금전입금		22,148	5,700	8,975		
	타학교회계전입금		138,480	142,300	91,800		
	기타공공지원금				573,254		
	기타민간지원금	221,683	69,544	128,503			
자 체 수 입	학교운영지원비	237,487	234,956	219,250	196,602		
	급식비	821,219	897,996	928,892	859,414		
	방과후학교활동비	145,396	144,571	84,080	72,892		
	현장체험학습비	146,784	125,193	145,943	149,077		
	졸업앨범비	16,704	17,476	17,083	16,608		
	교과서비	81,315	78,019	74,274	63,439		
	기숙사비	86,491	99,437	102,315	96,596		
	교복구입비	68,270	69,966	77,916	91,200		
	운동부운영비	191,607	162,000	257,540	290,463		
	기타수익자부담비			1,200			
	행정활동수입	74,836	201,857	37,125	80,284		
	기 타 수 입	순세계잉여금	110,012	79,557	87,459	206,768	
	정산재원사용잔액	2,850	4,798	43,948	94,015		
이월사업비	101,654	136,330	311,944	51,251			
계		6,389,430	7,289,634	7,720,542	8,147,955		
변 화 율		900,204(14.1%)	430,908(5.9%)	427,413(5.5%)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 회계연도 세입 결산 결과 2016년에 비해 2017년에 14.1%, 2017년에 비해 2018년에 5.9%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세입결산 결과 2018년보다 4억27백만원이 늘어난 81억47백955천원으로 사상 최초로 장부상 80억원을 넘었다.

### 1) 학교기본운영비

(금액단위: 천원)

항목	2016	2017	2018	2019	비고
학급수	41	41	41	41	
학생수	1,149	1,141	1,074	961	
<b>기본운영비</b>	<b>1,242,628</b>	<b>1,193,902</b>	<b>1,274,240</b>	<b>1,296,469</b>	경상운영비 포함
변화율	△48,726(△3.9%)	80,338(6.7%)	22,229(1.7%)		
<b>경상운영비</b>	<b>166,566</b>	<b>70,726</b>	<b>105,726</b>	<b>83,000</b>	공동실습수 경비 유·무
학교당 경비	716,037	716,037	716,287	732,945	
학급당 경비	153,754	153,754	153,754	153,094	
학생당 경비	256,227	254,443	239,502	214,303	

※ 출처: 예산과-5991(2016.6.14.), 예산과-8614(2017.7.27.), 예산과-8715(2018.9.21.), 예산과-5423(2019.5.24.)

기본운영비는 학교 재정 독립의 근간이다.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이듯이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중 기본운영비는 학교예산회계의 원천이다. 기준일자(매년 3월 1일)의 학교급, 학급수, 학생수를 정량화하여 표준적으로 개별 학교의 경비를 산정하는데 본교는 최근 4년 동안 학급수의 변동이 없는 대신 학생수 변동에 의한 미미한 수준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다만 2018년 대비 2019년에 학생수 감소(△113명)에도 불구하고 기본운영비가 오히려 22,229천원 증가한 이유는 기본운영비에 포함된 경상운영비 감소분(△22,726천원)보다 그 동안 예산과에서 감액해 오던 학교운영지원비를 올해는 감액하지 않은 결과 대략 2018년 51,164천원과의 차이(다른 항목의 근소한 차이까지 합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향후로도 우리 사회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급감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면 학교기본운영비 총액을 학생수 감소와 천편일률적으로 연동시키는 현 시스템 하에서 학교교육의 질은 기껏해야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갈수록 퇴보하는 만큼 이 대목에서 정부와 지방교육청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 2) 목적사업비

(금액단위: 천원)

항목	2016	2017	2018	2019	비고
교특전입금	3,948,681(100%)	4,543,313(100%)	4,822,573(100%)	5,000,317(100%)	
기본운영비	1,242,628(31.5%)	1,193,902(26.3%)	1,274,240(26.4%)	1,296,469(25.9%)	
<b>목적사업비</b>	<b>2,706,053(68.5%)</b>	<b>3,349,411(73.7%)</b>	<b>3,548,333(73.6%)</b>	<b>3,703,848(74.1%)</b>	
변화율	643,358(23.7%)	198,922(5.9%)	155,515(4.4%)		

넓은 의미에서 목적사업비는 순수한 기본운영비 이외의 모든 세입<sup>6)</sup>이다. 본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중 목적사업비 비중은 2016년 68.5%, 2017년 73.7%, 2018년 73.6%, 2019년 74.1%로 나타나 학교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학교기본운영비와 목적사업비 세입 결산 자료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세입총액에서 학교기본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학생수 감소라는 불가항력의 절대요인과 더불어 서서히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학교경영의 자율성과 독립성 면에서 상대적으로 구속력이 강한 목적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결국 학교살림을 경영·유지하는데 필요한 독립적인 재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직성 경비에는 재정압박이 점차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학교재정의 운용 능력과 스킬, 그리고 한층 강화된 책임성이 요구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6) 국고보조금(국가 및 산하기관), 전입금(지자체, 교특회계), 기타이전금, 수익자부담금(특정목적) 등 학교장의 배타적 예산편성권이 제한받는 성격의 재원

## 나. 세출 총괄

(금액단위: 천원)

목그룹	목·세목	2016	2017	2018	2019	비고
인건비	무기계약직	369,011	418,807	507,452	482,139	
	기간제교원	60,870	92,147	117,773	118,967	
	기간제직원	59,492	89,395	79,645	173,581	
	학교운영지원수당	82,984	81,906	83,843	89,210	
운영비	일반수용비	507,050	539,037	443,344	512,569	
	운영수당	377,649	451,289	489,275	514,200	
	전기요금	183,819	178,812	177,378	171,833	
	상하수도료	79,497	98,919	106,808	96,730	
	연료비	32,921	39,818	26,872	34,853	
	기타공공요금	20,685	19,541	17,784	19,153	
	급식재료비	579,505	619,946	656,181	604,287	
	여비	82,042	137,170	154,900	103,664	
	교직원복지비	10,965	14,597	14,360	15,104	
	맞춤형복지비	200	1,600		3,025	
	우유대금	11,421	15,426	12,950	15,663	
	교육운영비	1,367,422	1,488,793	1,526,610	1,583,468	
	학습준비물	11,080	12,682	10,975	6,957	
	학생복지비	47,470	18,320	22,289	17,450	
	학생지원금	1,553,102	1,658,986	1,856,213	1,837,544	
	법정부담금	19,306	22,217	16,424	44,171	
	일반업무추진비	12,508	12,700	18,008	17,282	
	직책업무추진비	4,044	4,044	4,044	4,044	
	목적사업업무추진비	19,083	41,809	31,829	32,228	
	자산취득비	시설비	56,000		203,654	470,029
시설사업적립금		12,285				
비품구입비		596,505	774,756	737,028	725,779	
도서구입비		8,987	8,776	8,965	10,150	
기타	예비비					
	반환금	2,850	4,790	43,932	88,855	
계		6,168,753	6,846,283	7,368,536	7,792,935	
변화율		677,530(11%)	522,253(7.6%)	424,399(5.7%)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 회계연도 세출 결산 결과 2016년에 비해 2017년에 11.0%, 2017년에 비해 2018년에 7.6%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년 평균치 9.3%를 적용할 경우 2019년 세출규모는 2018년보다 6억85백만원이 늘어난 80억53백만원으로 앞서 살펴 본 세입과 마찬가지로 장부상 80억원을 돌파할 걸로 예측했으나 결산 결과 5.76%, 4억24,399천원이 늘어난 77억92,935천원이었다.

### 1) 전기

(금액단위: 천원)

세목	통계비목	2016	2017	2018	2019	비고
일반운영비	전기요금	183,819	178,812	177,378	171,833	
변화율		△5,007(△2.7%)	△1,434(△0.8%)	△5,545(△3.1%)		
기본운영비 점유율		14.8%	15%	13.9%	13.2%	

학교 인프라(Infrastructure) 중 전기에너지 비용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2.2%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관점을 달리해서 기준량을 기본운영비로 바꿔서 비교하면, 2016년 14.8%, 2017년 15%, 2018년 13.9%, 2019년 13.2%로 전기요금이 기본운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학생수·학급수가 점차 감소해도 전기 에너지 비용은 별로 줄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학교재정을 압박할 개연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 2) 상하수도

(금액단위: 천원)

세목	통계비목	2016	2017	2018	2019	비고
일반운영비	상하수도료	79,497	98,919	106,808	96,730	
변화율		19,422(24.4%)	7,889(8%)	△10,078(△9.4%)		
기본운영비 점유율		6.4%	8.3%	8.4%	7.4%	

4년간(2016년~2019년) 평균 상하수도요금 총액(95,488천원)은 전기요금 총액(1억78백만원)의 53.6%이지만 그 증가 속도(+7.6%)는 전기요금(-2.2%)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기본운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 2. 이월금(순세계잉여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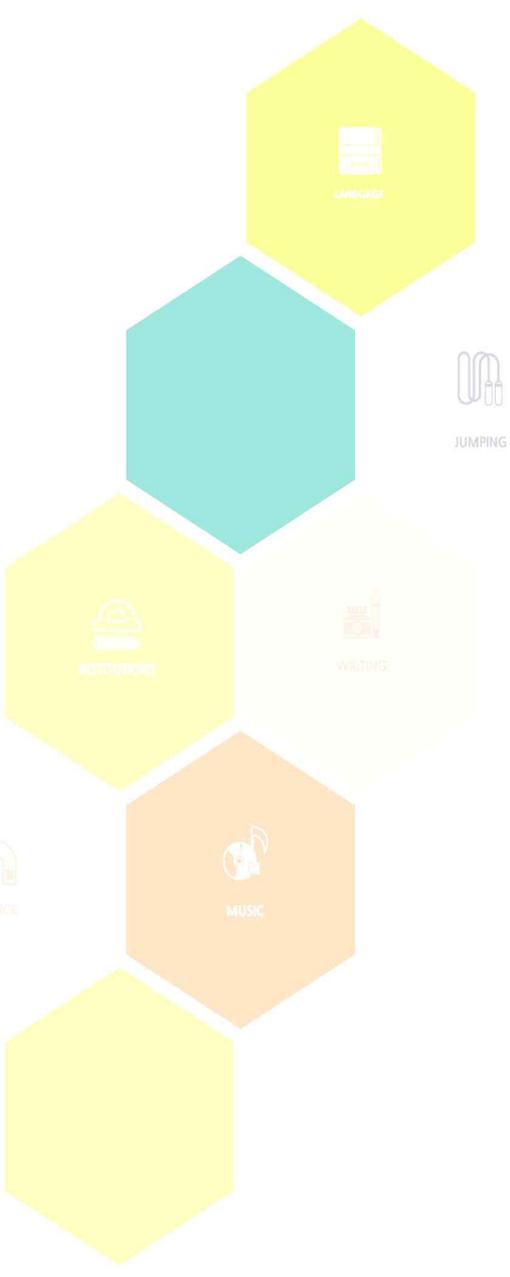
(금액단위: 천원)

항목	2015	2016	2017	2018	2019	비고
순세계잉여금	110,013	79,557	87,459	220,313	166,032	
(총)세입결산액	6,017,709	6,389,430	7,289,635	7,720,540	8,147,955	
<b>비용률</b>	<b>1.83%</b>	<b>1.25%</b>	<b>1.20%</b>	<b>2.85%</b>	<b>2.04%</b>	

(전년도)이월금은 결산과정에서 확정되고 당해연도 세입재원을 구성한다. 세입결산액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용률을 보면 2015년 1.83%, 2016년 1.25%, 2017년 1.20%로 1%대를 넘지 않았는데, 이는 예산회계 전반적으로 집행잔액(비용액)을 최소화하여 그만큼 충실하고 건전하게 학교재정활동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7)</sup>. 다만 2018년의 경우 예년에 비해 1%P 높은 2.85%를 기록했는데, 앞서 1. 학교회계 가.세입 총괄에서 논했듯이 본교 (전년도)이월사업비가 역대 최대인 3억11백944천원에 달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연스럽게 이 여파로 2019년 세입(본)예산 순세계잉여금 또한 역대 최대인 2억2천313천원을 기록하게 된 것이다. 작년 연말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의 글로벌 팬데믹(Pandemic)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직원들 특히 회계담당자들의 적극행정 마인드와 노력으로 비용률이 떨어진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예년 평균(1.78%)으로 회복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

이월제도가 재정운용 스킬의 일종인 것은 분명하나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서 보자면 일종의 예외 사항이다. 보통 이월금 규모가 큰 경우는 그만큼 당해연도의 사업비 집행이 저조했고 이 얘기는 해당사업의 성과가 미흡하거나 목적달성에 실패했을 확률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산은 기본적으로 학교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충실히 구현하도록 짜여 져야 하고 회계연도 내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제로화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7) 특별한 사유 없이 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비용액)이 전 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의 5%이상 발생한 학교는 당해연도(금년도) 학교기본운영비 5% 초과분 감액 교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학교발전기금 이해

주무관 김혜인

## I. 개념

### 1. 발전기금이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품**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모금금품**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성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을 말함

용어	정의
기부금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성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조직·단체 등이 반대급부 없이 <b>자유의사에 따라</b> 기부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 등을 말함
모금금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b>특정한 목적</b> 을 위하여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후에 <b>일반인(개인, 조직, 단체 등으로 학부모 참여 가능)</b> 을 대상으로 모금한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을 말함
자발적 조성금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b>특정한 목적</b> 을 위하여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후에 <b>학부모의 자발적 참여</b> 로 조성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수목 등을 말함

### 2. 학교발전기금회계 출납명령기관

출납원인행위 및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됨

### 3. 학교발전기금회계 출납원

출납명령기관의 출납원인행위 및 출납명령에 의한 출납과 보관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학교의 **학교회계 출납원**이 됨

## Ⅱ.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 수립

### 1. 계획수립 시기 및 방법

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결산소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로 확정

나.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예·결산소위원회 사전 검토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운용 계획을 변경하여야 함

### 2. 계획서의 내용

- 사업목적
- 기금 조성방법
- 수입 및 지출계획
- 기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2. 계획서의 공개 및 홍보

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된 계획서는 심의·의결 후 **1개월 이내**에 전체 기금운용계획서 사본을 공개하여야 함

나. 다만, 기금운영계획서의 분량이 많아 게시·발송이 곤란한 경우에는 요약서로 공개 가능하며, 전체 기금운용계획서의 열람을 요청할 때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Ⅲ. 학교발전기금의 관리·운용

### 1. 발전기금의 처리

가. (금전 및 유가증권) 수납 즉시 학교발전기금 회계에 수입 조치

나. (도서 및 물품) 접수 즉시 물품관계법령에 따라 도서대장 또는 물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등재

다. (수목 및 재산) 접수 즉시 재산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재산(수목)대장에 등재

## 2. 발전기금의 회계

가. **(회계의 설치·운영)** 학교운영위원회가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학교발전기금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단, 회계 설치 전에 기부금이 접수된 경우에는 즉시 회계를 설치하여야 함

나. **(회계연도)**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다. **(출납 폐쇄기한)**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 폐쇄한다.

## 3. 발전기금의 사용

가. 사용용도

사용 목적	사용 용도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교육시설의 범위는 보통교실, 교과교실, 특별교실, 도서실, 강당, 체육관, 급식실, 기숙사 등 <b>학교교육 및 학생지원 시설</b></li> <li>○ 화장실, 운동장, 냉난방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b>학생의 복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시설의 보수 및 확충에 한함</b></li> <li>○ 교사연구실,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 교원 복지시설 및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등 관리실과 목공실, 기계실, 전기실 등 <b>기타시설의 보수 및 확충은 제외</b></li> </ul>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용 기자재의 범위는 <b>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구 및 학생용 도서</b>로 한정함</li> </ul>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내 운동회, 체육대회 등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 지원</li> <li>○ 차량운영비, 출전비, 운동용품비, 운동부식비, 소모품비 등 학교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 지원</li> <li>○ <b>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은 학교회계에 진출하여 집행</b></li> <li>○ 전시회, 발표회, 학생축제, 학교신문 발간 등 학생학예활동 지원</li> </ul>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학금, 학우돕기 등 <b>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제 경비</b></li> <li>○ 학생회활동, 동아리활동, 청소년단체 활동 등 <b>학생자치활동을 위한 제 경비</b></li> </ul>

나. 축구부 지원금은 발전기금 접수 후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회계로 진출하여 집행 함

####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5항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여야 한다

다. 사용 제한사항

1) 학교회계 부족분 충당 및 일반수용비성\* 경비

\*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경비를 말하며 사무용품 등 소모성 물품구입비, 시설물·비품 등 소규모수선비, 각종 사용료·수수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

2) 교직원 등의 각종 수당(인건비), 여비, 연수비, 회식비, 물품(체육복) 구입비 등

3) 각종 협의회비, 간담회비, 선물비·화환, 경조사비 등 업무추진비

4) 기타 발전기금 운영계획 및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

#### 4. 학교발전기금회계의 결산

가. (결산보고)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나. (결산방법) 학교발전기금회계 결산보고서 작성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다. (보고대상) 관할청

라. 결산 공개

1) (공개기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2) (공개대상) 전체 학부모, 기탁자, 지역주민 등

3) (공개방법) 가정통신문 및 학교홈페이지

4) (공개서류) 학교발전기금회계 결산보고(붙임 서류는 생략 가능)

#### 5. 발전기금 업무의 위탁

가. 업무의 일부 위탁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

2)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 위원장이 학교발전기금회계 출납명령기관이 됨에 따라(발전기금의 본질적인 업무는 학교장에게 위탁할 수 없음)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

나. 업무의 관리 및 보고

1)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발전기금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학교발전기금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매 분기마다 학교운영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함

2) 학교운영위원회는 위탁업무에 관한 서면보고를 받을 경우에는 이를 검토 하여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함

3)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회계로 진출한 발전기금은 학교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관리해야 함

4) **학교회계로 진출한 발전기금은 사용 완료 후** 세부적인 집행 내역을 차기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시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함

6. 발전기금 조성·집행내역 정보공개

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계획서는 **1개월 이내**에, 발전기금 접수 및 집행내역 등 해당 발전기금 조성·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은 **분기별로 1개월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발전기금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할청 보고 및 공개 한다

\* 학교회계로 진출하여 사용한 집행내역도 함께 공개하여야 함

내 용	횟 수	시 기	공개기간
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변경)계획서	사안 발생시	심의·의결 후 1개월 이내	다음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발전기금 접수 및 집행내역	4회	분기별로 1개월 이내	다음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발전기금 결산서	연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전전년도 결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 [# 2]

## Ⅲ. 학교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행정계장 강양화

## Ⅳ.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행정계장 강양화

## Ⅴ. 위원회 연간 활동 계획

행정계장 강양화

# 학교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행정계장 강양화

## 1.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권한

### 가. 학교운영 참여권

-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즉, 학교운영위원들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들의 참여는 개인적 지위에서가 아니라 각 분야의 대표라는 공적(公的) 지위에 근거한 것이므로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나. 중요사항 심의·자문권

- 학교운영위원들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권한이 있다.
- 위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및 표결 과정을 통해 학교운영을 민주화하고 학교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본래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다.

### 다. 보고 요구권

-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할 때, 그리고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심의·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경우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한다.
-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경우, 또는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한다.

## 라. 시정명령 신청권

-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자문 사항임에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전라북도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조례 제10조의2)

##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의무

### 가. 회의 참여의 의무

-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나.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의 대가로 반대급부의 성격을 띤 보수나 수당을 요구할 수 없다.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세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교발전을 위해 동반자 의식을 가지고 학교교육에 대한 애정과 이해로 적극적 참여와 봉사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 학교운영위원은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 학부모위원 : 일반 학부모들의 의견과 학부모회에서 논의되는 내용
  - 교원위원 : 학생과 교직원들이 바라는 학교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교직원들에게 전달
  - 지역위원 : 지역사회 인사들과 주민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요구사항
-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그리고 교원위원 각자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 상호 이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학교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 및 운영전반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학교운영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5)

#### 가. 위원의 제척(除斥)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②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④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나. 위원의 기피(忌避)

-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다. 위원의 회피(回避)

-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행정계장 강양화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약칭: 청탁금지법 )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58호, 2019. 11. 26,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청탁금지제도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5. 29.>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

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 제5장 징계 및 벌칙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4.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5. 제18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은 몰수한다. 다만, 그 금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2.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

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③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④ 제10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있는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⑦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청탁금지법 시행령 )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국민권익위원회(청탁금지제도과)

###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별표 1] <개정 2018. 1. 17.>

####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至誠 勇氣 創造

꿈과 희망을 소중히 가꾸는 창의적인 직업인 육성

전주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제13기 연간 활동 계획(안)

2020. 4. 10.

전주공업고등학교

# 전주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 제13기 연간 활동 계획(안)

전주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 I. 구성 현황

1. 임기: 2020.4.1. ~ 2022.3.31.
2. 운영위원

구분	성명	비고
학부모 위원 (4)	전한철	전종혁 (1-3,토목)
	이인환	이한나 (3-5,토목)
	원혜정	김주성 (2-13,전자)
	김종욱	김도윤 (1-11,전자)
지역 위원 (4)	백순기	전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현주	11기 학부모위원
	안승철	서강개발 대표
	이준수	엔드림건축사사무소대표
교원 위원 (3)	윤홍진	학교장
	정병현	교무
	김병우	인성인권

3. 간사: 행정실장

## II. 연간 활동 계획

### 1. 관련 위원회규정

제23조 (회의 및 소집)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회의 횟수는 연 4회 이상으로 하며, 회의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학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2. (참고) 2019년 사례

순	회수(차수)	종류	일시	장소
1	제7회(85차)	정기회	2019.4.10.(수)11:00	100주년 역사관
2	제8회(86차)	임시회	2019.8.20.(화)11:00	100주년 역사관
3	제9회(87차)	임시회	2019.10.16.(수)11:00	100주년 역사관
4	제10회(88차)	임시회	2019.11.18.(월)11:30	100주년 역사관
5	제11회(89차)	임시회	2019.12.18.(수)11:00	100주년 역사관
6	제12회(90차)	임시회	2020.2.10.(월)11:00	100주년 역사관

### 3. 2020년 회의 운영 계획

순	회수(차수)	종류	일시	소집이유
1	제1회(91차)	정기회	2020.4.10.(금)10:30	
2	제2회(92차)	임시회	2020.6.10.(수)11:00	도교육청 1회추경에 따른 본교 2회추경, 현장학습, 졸업앨범, 교복 등 교무학사
3	제3회(93차)	임시회	2020.9.9.(수)11:00	전국기능경기대회 관련 예산, 교무학사 등 안전심의
4	제4회(94차)	임시회	2020.11.18.(수)11:00	2021교육과정, 학칙, 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 추경(안) 등 심의
5	제5회(95차)	임시회	2020.12.16.(수)11:00	추경, 2021축구부동계훈련, 2021방과후학교 등 교무학사 안전심의
6	제6회(96차)	임시회	2021.2.5.(금)10:30	2021학사운영, 2021본예산, 정리추경, 발전기금, 안전계획 등 심의

### 4. 자체 연수

연번	일자	장소	내용	비고
1	2020.4.10.(금)	100주년 역사관	- 전주공고 재정운영 기본방향 - 학교발전기금 이해 - 학교운영위원 권한과 의무 -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 13기 학교운영위원회 연간 활동 계획	91차
2	2020.12.16.(수)	100주년 역사관	- 2021학년도 전주공업고등학교회계 본예산 편성 및 재정운용 기본 방향 - 청렴 및 청탁금지법 이해와 사례	95차

### 5. 위원장(대표위원) 대외 참여 활동

구분	전라북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전주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비고
횟수	연 2~4회	연 4~6회	※ 참석위원에 한해 주최측 또는 학교에서 교통비 등 실비 보상(공무원여비 적용)
대상	위원장(원칙) 위원장 불참시 부위원장 또는 참석가능한 위원(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	위원장(원칙) 위원장 불참시 부위원장 또는 참석가능한 위원(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	
목적	학교운영위원의 역량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프로그램, 전북교육시책에 대한 소통과 정보공유, 타 학교 운영위원과의 친교 등		